

교육과정조정위원회규정

제정 : 1995.09.01
개정 : 1998.11.05
개정 : 2014.11.01
개정 : 2016.12.01
개정 : 2020.03.01
개정 : 2020.12.01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2.10.01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과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.)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.

제2조(구성) ① <삭제 2014.11.01.>

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업무를 통괄하고,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3.10.16.>

③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12.01.>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01., 2021.12.01.>

제3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20.12.01., 2021.12.01.>

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조사 활동을 수행한다. <개정 2016.12.01., 2021.12.01.>

1. 일반 교육과정
2. 학사학위전공심화 교육과정
3. 교육과정연계 교육과정
4. 교육과정 공동 운영과정
5. 사회맞춤형 교육과정
6. 기타 교육과정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한다.

<신설 2016.12.01.> <개정 2021.12.01.>

1. 교육과정 제정에 관한 사항

2.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

제5조(교육과정 연구회) ① 산업사회 요구충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학과 특성에 알맞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각 학과에 교육과정 연구회를 둔다.

② 교육과정 연구회는 각 학과 전임교원과 겸임교원 및 관련 산업체 인사 중 위촉받은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학과장이 된다. <개정 2014.11.01., 2016.12.01., 2021.12.01.>

③ 교육과정 연구회의 위원장은 심의의결 된 사항의 회의록, 교육과정 신·구 대비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해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④ 교육과정 연구회의 회의소집 및 업무는 해당 학과장이 통괄한다.

⑤ 교육과정 연구회는 일반과정,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, 교육과정연계과정, 교육과정 공동운영과정, 사회맞춤형교육과정 등을 연구한다. <신설 2016.12.01.>

제6조(업무관리) 위원회의 업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위원회 행정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20.12.01.>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